회계학개론

※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문제에서 주어진 이자율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연(年)이자율이며,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다.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계산문제에서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의 답을 선택한다. 위의 조건 하에서 각 문제의 답지항 중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금융자산의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②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아무리 발생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③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④ 금융상품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활성시장이 소멸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손상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등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2. (주)세무는 20×1년 초 친환경 영업용 차량(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을 공정가치 ₩10,000,000에 취득하면서, 자산취득에 따른 정부보조금으로 ₩5,000,000을 수취하였다. 동 차량을 중도처분할 경우 내용연수 미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정부보조금 잔액을 즉시 상환한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월할상각)을 적용하였으며, 20×3년도 7월 1일에 동 자산을 ₩4,000,000에 처분하였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의 표시방법으로 장부금액에서 차감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동 차량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1년 말 차량의 장부금액은 ₩4,000,000이다.

② 20×2년 말 정부보조금 잔액은 ₩3,000,000이다.

③ 20×2년도의 동 차량과 관련하여 인식할 당기손익은 (-)₩2,000,000이다.

④ 20×3년 처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은 ₩1,500,000이다.

⑤ 20×3년 정부보조금 상환금액은 ₩2,500,000이다.

3. (주)세무는 20×1년 초 사채(액면금액 ₩100,000, 만기 3년, 매 연말 이자지급 표시이자율 5%)를 ₩87,565에 발행하였으며, 유효이자율은 10%이다. 20×2년 말 사채관련 이자비용 회계처리를 한 후 장부마감 전에 20×1년과 20×2년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상각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0×2년 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10%	5%	10%
1	0.95238	0.90909	0.95238	0.90909
2	0.90703	0.82645	1.85941	1.73554
3	0.86384	0.75131	2.72325	2.48685

	(차변)		(대변)	
①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이자비용	401
②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이자비용	13
			이익잉여금	388
③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이익잉여금	401
④	이자비용	401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⑤	이자비용	13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이익잉여금	388		

4. (주)세무는 20×1년 초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을 ₩1,000,000에 취득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이중체감법(상각률 40%)으로 감가상각하였다. 재평가일인 20×1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가 ₩900,000이고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평가 회계처리할 때, 재평가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차변)		(대변)	
①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건물	100,000
			재평가잉여금	300,000
②	감가상각누계액	260,000	재평가잉여금	260,000
③	감가상각누계액	360,000	건물	100,000
			재평가잉여금	260,000
④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재평가잉여금	400,000
⑤	재평가손실	100,000	건물	100,000

5. 충당부채의 변동과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의무를 제삼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이행하여야 하는 전체 의무 중에서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까지만 충당부채로 처리한다.

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한다.

③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액하고 해당 증가 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④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삼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한다.

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6. 중간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다면 중간재무보고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연차보고기간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자세하게 조정되는 일부 내부거래 잔액은 중간보고기간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덜 자세하게 조정될 수 있다.

② 중간재무보고서는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자본변동표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현금흐름표를 포함한다.

③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및 정부보조금 등이 예이다.

④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연차재무보고서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간기간의 측정은 연차재무자료의 측정에 비하여 추정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세무상결손금의 소급공제 혜택은 관련 세무상결손금이 발생한 중간기간에 반영한다.

7. (주)세무는 원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해외사업장으로 20×1년 초 달러 표시 재고자산을 $100에 매입하여 20×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다. 동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거래일 및 20×1년 말의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현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구 분	외화금액	환 율
취득원가	$100	거래일 환율(₩1,000/$)
순실현가능가치	$96	20×1년 말 마감환율(₩1,050/$)

	장부금액	재고자산평가손실		장부금액	재고자산평가손실
①	₩96,000	₩4,000	②	₩100,000	₩0
③	₩100,000	₩4,000	④	₩100,000	₩4,200
⑤	₩100,800	₩0			

8. 20×1년 말 (주)세무의 자산총액은 기초 대비 ₩4,000,000 증가하였고, 부채총액은 기초 대비 ₩2,000,000 감소하였다. 20×1년 중에 유상증자를 하고 그 대가 전액 ₩500,000을 토지 취득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무상증자 ₩1,000,000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금배당 ₩800,000과 주식배당 ₩500,000을 결의·지급하였고, 자기주식을 ₩600,000에 취득하였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기말 공정가치가 기초 대비 ₩400,000 증가하였다면,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① ₩5,000,000 ② ₩5,500,000 ③ ₩6,000,000 ④ ₩6,500,000 ⑤ ₩7,000,000

9. (주)세무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은?

> ○ 20×1년 말 재고실사를 한 결과 (주)세무의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의 원가는 ₩100,000이다.
> ○ 20×1년도 중 고객에게 원가 ₩80,000 상당의 시송품을 인도하였으나, 기말 현재까지 매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 ○ 20×1년도 중 운영자금 차입목적으로 은행에 원가 ₩80,000의 재고자산을 담보로 인도하였으며, 해당 재고자산은 재고실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 ○ (주)한국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년도 중 원가 ₩100,000 상당의 재고자산을 (주)한국으로 운송하였으며, 이 중 기말 현재 미판매되어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40,000이다.
> ○ (주)대한으로부터 원가 ₩65,000의 재고자산을 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하였으나 20×1년 말 현재 운송중이다.

① ₩220,000 ② ₩260,000 ③ ₩300,000 ④ ₩320,000 ⑤ ₩365,000

10. (주)세무는 20×1년 초 (주)한국과 건설계약(공사기간 4년, 계약금액 ₩2,000,000)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20×2년	20×3년	20×4년
누적발생계약원가	₩280,000	₩960,000	₩1,280,000	₩1,600,000
추정총계약원가	1,4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주)세무는 20×1년에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였으나, 20×2년 초부터 시작된 (주)한국의 재무상태 악화로 20×2년에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게 되었고 계약금액 중 보험에 가입된 ₩800,000만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20×3년 초 (주)한국의 재무상태가 다시 정상화됨에 따라 계약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 (주)세무가 20×1년, 20×2년 및 20×3년에 인식할 공사손익은? (단, (주)세무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진행률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20×1년	20×2년	20×3년
①	₩120,000 이익	₩280,000 손실	₩480,000 이익
②	₩120,000 이익	₩120,000 손실	₩320,000 이익
③	₩120,000 이익	₩0	₩200,000 이익
④	₩120,000 이익	₩120,000 이익	₩80,000 이익
⑤	₩0	₩0	₩320,000 이익

11. (주)세무는 20×1년 초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인 기계를 ₩4,500,000에 매입하였으며, 설치장소를 준비하는데 ₩500,000을 지출하였다. 동 기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매 회계연도 말 기계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할 때,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구 분	20×1년 말	20×2년 말
순공정가치	₩2,000,000	₩3,500,000
사용가치	1,800,000	2,500,000

① 20×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1,000,000이다.

② 20×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2,000,000이다.

③ 20×2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 환입액은 ₩1,500,000이다.

④ 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500,000이다.

⑤ 20×2년 말 기계의 장부금액은 ₩3,500,000이다.

12.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②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③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이라는 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한다.

④ 표현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 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⑤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13. **(주)세무는 20×1년 초 토지를 ₩1,000,000에 취득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해 오던 중 20×4년 초에 동 토지를 ₩1,150,000에 처분하였다. 취득 후 각 보고기간 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20×4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할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 (주)세무는 취득시점부터 동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매년 적용하고 있으며, 토지와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토지를 제거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20×1년 말	20×2년 말	20×3년 말
₩1,100,000	₩900,000	₩1,200,000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①	₩50,000 이익	₩0	②	₩50,000 이익	₩200,000 손실
③	₩0	₩150,000 손실	④	₩50,000 손실	₩0
⑤	₩50,000 손실	₩200,000 손실			

14. (주)세무의 20×1년 중 자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자본 증가액은? (단, (주)세무는 주당 액면금액이 ₩1,000인 보통주만을 발행하고 있다.)

○ 2월 1일: 보통주 200주를 주당 ₩1,500에 유상증자
○ 3월 31일: 자기주식 50주를 주당 ₩1,000에 취득
○ 5월 10일: 3월 31일에 취득한 자기주식 중 20주를 소각
○ 7월 1일: 상장기업 A사 주식 150주를 주당 ₩1,500에 취득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
○ 8월 25일: 보통주 50주를 무상감자
○ 9월 1일: 보통주 100주를 주당 ₩800에 유상감자
○ 12월 31일: 상장기업 A사 주식 공정가치 주당 ₩1,200

① ₩55,000 ② ₩105,000 ③ ₩115,000 ④ ₩125,000 ⑤ ₩235,000

15. (주)세무는 20×1년 초에 (주)한국의 주식 25%를 ₩1,000,000에 취득하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취득일 현재 (주)한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4,000,000이며,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주)한국은 20×1년도 총포괄이익 ₩900,000(기타포괄이익 ₩100,000 포함)을 보고하였다. (주)세무가 20×1년 중에 (주)한국으로부터 중간배당금 ₩60,000을 수취하였다면, (주)세무가 20×1년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지분법이익은?

① ₩60,000 ② ₩165,000 ③ ₩200,000 ④ ₩225,000 ⑤ ₩260,000

16. (주)세무와 (주)한국은 20×1년 초에 모든 조건이 동일한 영업용 차량(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500,000)을 ₩9,000,000에 각각 취득하였다. 두 회사가 동 차량에 대하여 각 보고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던 중, 두 회사 모두 20×4년 초 현금 ₩3,000,000에 동 차량을 매각하였다.

	20×1년	20×2년	20×3년
(주)세무	정률법	정률법	정액법
(주)한국	정액법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

두 회사의 총수익 및 동 차량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총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옳은 설명은? (단, (주)세무와 (주)한국은 동 차량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률법 상각률은 55%이다.)

①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주)한국이 더 작다.

② 20×4년 초에 인식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주)세무가 더 크다.

③ (주)세무의 20×2년도 감가상각비는 ₩4,675,000이다.

④ (주)한국의 20×3년 말 차량 장부금액은 ₩1,145,833이다.

⑤ (주)세무의 20×3년도 감가상각비는 ₩330,625이다.

17. (주)세무의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20×1년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퇴직급여 관련 비용은?

가. 확정급여채무(현재가치)

구분	20×1년
기초금액	₩150,000
당기근무원가	25,000
이자비용	15,000
과거근무원가	5,000
퇴직금 지급	(3,000)
재측정요소	(600)
기말금액	₩191,400

나. 사외적립자산(공정가치)

구분	20×1년
기초금액	₩120,000
이자수익	12,000
현금출연	35,000
퇴직금 지급	(3,000)
재측정요소	500
기말금액	₩164,500

① ₩30,000 ② ₩33,000 ③ ₩40,000 ④ ₩45,000 ⑤ ₩50,000

18. (주)세무의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5,000주였다. 20×1년 중 보통주식수의 변동내역이 다음과 같다면, 20×1년도 기본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 2월 1일: 유상증자(발행가격: 공정가치) 20%
○ 7월 1일: 주식배당 10%
○ 9월 1일: 자기주식 취득 1,800주
○ 10월 1일: 자기주식 소각 600주
○ 11월 1일: 자기주식 재발행 900주

① 17,750주 ② 18,050주 ③ 18,200주 ④ 18,925주 ⑤ 19,075주

19. (주)세무의 20×1년도 및 20×2년도 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년도 기말재고자산: ₩4,000,000(단위당 원가 ₩1,000)
○ 20×2년도 매입액: ₩11,500,000(단위당 원가 ₩1,250)
○ 20×2년도 매출액: ₩15,000,000

20×2년 말 장부상 상품수량은 4,000개였으나, 실지재고조사 결과 기말수량은 3,500개로 확인되었다. 20×2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예상 판매가격은 단위당 ₩1,500이며, 단위당 ₩300의 판매비용이 예상된다. (주)세무가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때, 20×2년도에 인식할 당기손익은?

① ₩3,000,000 이익 ② ₩3,700,000 이익 ③ ₩3,875,000 이익
④ ₩4,300,000 이익 ⑤ ₩4,500,000 이익

20. (주)세무는 (가) ~ (바) 영업부문을 가지고 있으며, 부문수익(내부 및 외부) 및 부문당기손익과 부문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문	부문수익	부문당기이익(손실)	부문자산
가	₩360,000	₩20,000	₩324,000
나	250,000	10,000	261,000
다	90,000	(10,000)	81,000
라	120,000	(5,000)	81,000
마	130,000	4,000	99,000
바	50,000	6,000	54,000
합계	₩1,000,000	₩25,000	₩900,000

양적기준에 따라 (주)세무가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부문으로 옳은 것들로만 모두 고른 것은? (단,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고하기 위한 다른 기준들은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한다.)

① 가, 나 ② 가, 나, 마, 바 ③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바 ⑤ 가, 나, 다, 라, 마, 바

21. 특수관계자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관계는 거래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한다.

②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들과의 특수관계자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투자기업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그 종속기업 간을 제외하고 연결실체 내 기업 간 특수관계자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은 그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제거된다.

③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의 특수관계자로 본다. 이 때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범위는 자녀 및 배우자로 한정한다.

④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분류별 금액을 공시한다. 분류별 금액에는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급여, 해고급여, 주식기준보상이 해당된다.

⑤ 특수관계는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거래가 없더라도 특수관계 자체가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2.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②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③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정영업이익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④ 이익의 분배에 대해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지는 보통주 종류별로 이에 대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그러나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이 부의 금액(즉, 주당손실)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⑤ 기업이 상당 기간 계속 사업이익을 보고하였고,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세한 분석이 없이도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회계처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3. **(주)세무의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20×1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의 20×1년도 투자활동순현금흐름과 재무활동순현금흐름은? (단, (주)세무는 이자의 지급, 이자 및 배당금의 수입은 영업활동으로,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 유상증자로 ₩250,000, 장기차입금으로 ₩300,000을 조달하였다.
○ 20×1년 초 매출채권 잔액은 ₩300,000이었고, 여기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20,000 설정되어 있다. 20×1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500,000이며, 대손추정을 통하여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50,000으로 증가하였다.
○ 20×0년 경영성과에 대해 20×1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200,000을 지급하였다.
○ 기초와 기말의 법인세 부채는 각각 ₩300,000과 ₩400,000이었다.
○ 당기에 유형자산을 총원가 ₩1,500,000에 취득하였으며, 이 중에서 ₩900,000은 금융리스로 취득하였다. 나머지 ₩600,000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금융리스부채의 상환은 20×2년 초부터 이루어진다.
○ 취득원가가 ₩800,000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500,000인 공장 설비를 현금매각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을 인식하였다.

	투자활동순현금흐름	재무활동순현금흐름
①	₩200,000 유출	₩350,000 유입
②	₩200,000 유출	₩550,000 유입
③	₩400,000 유입	₩200,000 유출
④	₩600,000 유출	₩350,000 유입
⑤	₩600,000 유출	₩550,000 유입

24. (주)세무의 20×1년도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의 재고자산평균보유기간은? (단, 재고자산회전율 계산 시 평균재고자산을 사용하며,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 매출총이익: ₩106,000 ○ 당기 현금매출액: ₩45,000 ○ 기초 매출채권: ₩60,000 ○ 기말 매출채권: ₩105,000 ○ 당기 매출채권 회수액: ₩250,000 ○ 기초 상품재고: ₩150,000 ○ 당기 상품매입액: ₩194,000

① 200일 ② 210일 ③ 220일 ④ 230일 ⑤ 240일

25. 사업결합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전한 자산이나 부채가 사업결합을 한 후에도 결합기업에 여전히 남아 있고, 취득자가 그 자산이나 부채를 계속 통제하는 경우에는, 취득자는 그 자산과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자산과 부채에 대한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②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이다. 그러나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③ 취득자와 피취득자가 지분만을 교환하여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취득일에 피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가 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보다 더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취득자는 이전한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를 사용하여 영업권의 금액을 산정한다.

④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자는 취득일에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⑤ 공정가치로 측정한 보상자산의 경우에 회수 가능성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 영향을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하였으므로 별도의 평가충당금은 필요하지 않다.

26. (주)세무의 지난 6개월간 기계가동시간과 기계수선비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고저점법을 사용하여 7월의 기계수선비를 ₩2,019,800으로 추정하였다면, 예상 기계가동시간은? (단, 기계수선비의 원가동인은 기계가동시간이다.)

월	기계가동시간	기계수선비
1	3,410시간	₩2,241,000
2	2,430	1,741,000
3	3,150	1,827,000
4	3,630	2,149,000
5	2,800	2,192,500
6	2,480	1,870,000

① 2,800시간 ② 3,140시간 ③ 3,250시간 ④ 3,500시간 ⑤ 3,720시간

27. (주)세무는 결합원가 ₩15,000으로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한다. 제품 A와 제품 B는 각각 ₩7,000과 ₩3,000의 추가 가공원가(전환원가)를 투입하여 판매된다. 순실현가치법을 사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분하면 제품 B의 총제조원가는 ₩6,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20%이다. 제품 A의 매출총이익률은?

① 23% ② 24% ③ 25% ④ 26% ⑤ 27%

28. (주)세무는 주문을 받고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이다.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6,200, 단위당 변동 가공원가(전환원가) ₩11,800이며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4,200,000이다. 20×0년도에 280개를 주문 받아 판매하였으며, 매출총이익률은 25%였다. 판매가격과 원가구조가 20×0년과 동일하다면 20×1년도에 ₩1,000,000 이상의 매출총이익을 얻기 위한 최소 판매량은?

① 160개 ② 170개 ③ 180개 ④ 190개 ⑤ 200개

29. 표준원가를 사용하는 (주)세무의 20×1년 직접노무원가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예상 제품생산량은?

직접노무원가 고정예산	₩896,400
직접노무원가 실제발생액	₩1,166,400
단위당 표준 직접노무시간	83시간
단위당 실제 직접노무시간	81시간
실제 제품생산량	300개
임률차이	₩437,400 (불리)

① 300개 ② 350개 ③ 360개 ④ 400개 ⑤ 450개

30. (주)세무는 가공부문(도색 및 조립)과 보조부문(수선 및 동력)으로 구성된다. 다음의 서비스 공급량 자료를 이용하여 상호배부법으로 보조부문의 원가를 가공부문에 배부한다.

	보조부문		가공부문	
	수선	동력	도색	조립
수선		75시간	45시간	30시간
동력	200kw		100kw	200kw

수선부문과 동력부문에 각각 집계된 원가는 ₩300,000과 ₩200,000이다. 가공부문에 배부된 원가는 도색 횟수와 조립시간에 비례하여 각각 제품 A와 제품 B에 전액 배부된다. 제품 A와 제품 B에 사용된 도색 횟수와 조립시간이 다음과 같을 때, 제품 B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의 총원가는?

	제품 A	제품 B
도색 횟수	10회	13회
조립시간	200시간	100시간

① ₩210,000 ② ₩220,000 ③ ₩240,000 ④ ₩250,000 ⑤ ₩280,000

31. 다음은 (주)세무의 공헌이익 손익계산서와 전부원가 손익계산서이다. 고정판매관리비가 ₩94,000이고 제품의 판매가격이 단위당 ₩1,500일 때,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는? (단, 기초 및 기말재공품, 기초제품은 없다.)

공헌이익 손익계산서	
매출액	₩1,200,000
변동원가	456,000
공헌이익	744,000
고정원가	766,000
영업이익(손실)	(22,000)

전부원가 손익계산서	
매출액	₩1,200,000
매출원가	937,600
매출총이익	262,400
판매관리비	150,000
영업이익(손실)	112,400

① ₩154,000 ② ₩171,300 ③ ₩192,000 ④ ₩214,500 ⑤ ₩234,400

32. (주)세무는 기존 제품에 추가하여 새로운 제품 F(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4)를 생산·판매하려고 한다. 이 경우 기존 제품의 총공헌이익이 연간 ₩80,00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 F를 생산하면, 연간 총고정제조간접원가 중 ₩55,000이 제품 F에 배부되며, 기존에 납부하던 연간 유휴토지부담금 ₩25,000이 전액 면제된다. 제품 F를 판매할 경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기존 제품에 대한 연간 고정판매비를 ₩35,000만큼 줄이는 대신에 제품 F의 판매비를 단위당 ₩4씩 지급하게 된다. 제품 F의 연간 판매량이 4,000단위로 예상될 때, (주)세무의 연간 총손익에 변화가 없으려면 제품 F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① ₩13 ② ₩23 ③ ₩35 ④ ₩43 ⑤ ₩55

33. (주)세무는 흠집이 있는 제품 C를 5개 보유하고 있다. 흠집이 없는 정상적 제품 C의 판매가격은 ₩300이다. 제품 C의 생산에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0과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20이 투입되었다. 흠집이 있는 제품 C를 외부에 단위당 ₩150에 처분하려면 단위당 판매관리비가 ₩12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사결정에 고려될 관련 항목은?

① 단위당 판매관리비 ₩12
②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0
③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20
④ 단위당 제조원가 ₩100
⑤ 정상 판매가격 ₩300

34. (주)세무는 가중평균법을 적용한 종합원가계산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한다. 기말재공품의 물량은 8,000단위이고, 직접재료원가 완성도는 70%이며 가공원가(전환원가) 완성도는 75%이다. 기말재공품의 원가가 ₩220,000이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직접재료원가가 ₩20이라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가공원가(전환원가)는?

① ₩18 ② ₩19 ③ ₩20 ④ ₩21 ⑤ ₩22

35. 단일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세무의 20×1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을 계산할 때 사용한 연간 예산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실제 제품생산량	45,000단위
제품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2시간
예상 총직접노무시간(기준 조업도)	72,000시간
실제발생 고정제조간접원가	₩66,000
조업도차이	₩16,200 (유리)

① ₩62,600 ② ₩64,800 ③ ₩66,000 ④ ₩68,400 ⑤ ₩70,200

36. (주)세무는 제품 A, 제품 B 및 제품 C를 생산하여 판매한다. 이 세 제품에 공통으로 필요한 재료 K를 품귀현상으로 더 이상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 (주)세무의 재료 K 보유량은 3,000kg이며, 재료 K가 소진되면 제품 A, 제품 B 및 제품 C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 (주)세무는 각 제품의 사전계약 물량을 의무적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사전계약 물량과 별도로 추가 최대수요량까지 각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주)세무의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최대의 공헌이익 총액(사전계약 물량 포함)은?

	제품 A	제품 B	제품 C
사전계약 물량	100단위	100단위	300단위
추가 최대수요량	400단위	100단위	1,500단위
단위당 판매가격	₩100	₩80	₩20
공헌이익률	24%	25%	60%
단위당 재료 K 사용량	3kg	5kg	2kg

① ₩19,000 ② ₩19,500 ③ ₩20,000 ④ ₩20,500 ⑤ ₩21,000

37.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며 개별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한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당 ₩6을 예정 배부한다. 재료계정의 기초금액은 ₩10,000이며, 기말금액은 ₩15,000이다. 재료는 모두 직접재료로 사용되고 간접재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당기총제조원가는 ₩650,000이며 당기제품제조원가는 ₩640,000이다. 직접노무원가는 ₩250,000이며, 실제 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은 20,000시간이다. (주)세무가 당기에 매입한 재료금액은?

① ₩270,000 ② ₩275,000 ③ ₩280,000 ④ ₩285,000 ⑤ ₩290,000

38. (주)세무의 외상매출대금은 판매 당월(첫째 달)에 60%, 둘째 달에 35%, 셋째 달에 5% 회수된다. 20×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 잔액은 ₩70,000이며, 이 중 ₩60,000은 20×1년 12월 판매분이고, ₩10,000은 20×1년 11월 판매분이다. 20×2년 1월에 현금매출 ₩80,000과 외상매출 ₩350,000이 예상될 때, 매출과 관련된 20×2년 1월의 현금유입액과 1월말 매출채권 잔액은?

	현금유입액	매출채권 잔액		현금유입액	매출채권 잔액
①	₩335,000	₩145,000	②	₩345,000	₩145,000
③	₩345,000	₩147,500	④	₩352,500	₩145,000
⑤	₩352,500	₩147,500			

39. 3월에 (주)세무의 매출액은 ₩700,000이고 공헌이익률은 54%이며 영업레버리지도는 3이다. 4월에 고정원가인 광고비를 3월보다 ₩30,000 증가시키면 매출이 3월보다 10% 증가하며 공헌이익률의 변화는 없다. (주)세무가 광고비를 ₩30,000 증가시킬 때, 4월의 영업이익은?

① ₩98,000 ② ₩102,100 ③ ₩115,800 ④ ₩128,500 ⑤ ₩133,800

40. 활동기준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접원가의 비중이 높을수록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도입효과가 크다.

② 전통적인 간접원가 배부방법에 비해 다양한 배부기준이 사용된다.

③ 판매관리비에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활동원가의 계층구조 중 배치(묶음)수준원가는 배치 수나 활동시간 등을 원가동인으로 사용한다.

⑤ 전통적인 간접원가 배부방법에 비해 인과관계를 반영하는 배부기준을 찾아내는데 많은 노력을 들인다.

행정소송법

41. 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재결의 내용의 위법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제기된 재결취소소송은 각하판결의 대상이다.

④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하한 재결의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 행한 인용재결의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42.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소송

② 행정청의 작위의무 위반의 부작위에 대하여 당해 작위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이행소송

③ 신축 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⑤ 집행행위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

43. 행정소송의 유형별 원고적격이 행정소송법의 규정과 다른 것은?

① 취소소송 -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② 무효등확인소송 -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③ 당사자소송 - 법률에 정한 자

④ 기관소송 - 법률에 정한 자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44.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ㄴ.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
ㄷ.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ㄹ.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소송
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교육감의 소송

① ㄹ, ㅁ　② ㄱ, ㄴ, ㄷ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45. 취소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소기간 도과 여부　② 원고적격 인정 여부　③ 재량남용 여부
④ 대상적격 인정 여부　⑤ 소의 이익 유무

46.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적극적 형성소송
②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
③ 형식적 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 청구소송
④ 민중소송
⑤ 위헌법률 무효화 소송

47.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 허용된다.
②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
④ 피고는 언제나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
⑤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48.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군의관에 의한 신체등위판정
② 건축신고 반려행위
③ 어업권면허에 앞서 행한 우선순위결정
④ 검사가 제기한 공소
⑤ 가산금의 미납에 대해 반복된 제2차의 독촉처분

49.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

②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③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

④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

⑤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50. **하나의 처분 중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과세처분
ㄴ. 개발부담금부과처분
ㄷ.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부과처분
ㄹ.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1.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의 대상이 되는 소는 사실심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

③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는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소가 변경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52. **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집행정지결정 ②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③ 무효확인소송의 인용판결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

⑤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

53.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② 내부위임의 경우에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위임청이 된다.

③ 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된다.

④ 합의제 행정청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⑤ 권한의 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

54.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의 소송참가를 위해 요구되는 이익에는 단순한 경제상의 이익도 포함된다.

② 제3자의 소송참가에서 제3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청은「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⑤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55. < 보 기 >와 같은 판결 주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다만,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OO처분은 위법하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①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나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법원은 〈보기〉와 같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공익성 판단을 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보기〉와 같은 판결을 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미리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보기〉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다.

⑤ 원고가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6. 행정소송법상 각종 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송요건은 사실심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③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시 그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령시점에 소급한다.

57.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본안이 계속중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②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③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 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라 할지라도 법원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유형의 손해뿐만 아니라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58.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속력에 위반되는 처분은 무효이다.

② 기속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서는 인정되나 각하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도 미친다.

④ 취소판결이 처분의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⑤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처분 당시에 있었던 사유로 재처분하여도 기속력 위반은 아니다.

5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피고가 원고의 해당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라도 소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

② 원고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③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⑤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60.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세무조사결정
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
ㄷ.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ㄹ.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61.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강학상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② 입주자가 건축물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③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④ 사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⑤ 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같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62.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ㄴ.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ㄷ.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 전에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3.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별공시지가결정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④ 과세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처음의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
⑤ 과세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

64. **행정소송법상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에 관련된 원상회복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
②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④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취소소송에는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65. 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그 효력이 미친다.

③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④ '처분등'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포함된다.

⑤ 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6. 취소소송 심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하지도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② 자유심증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④ 법원이 소송절차를 직권으로 진행시키는 직권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공개주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67.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②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③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특성상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68.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는?

①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법한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웃주민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②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③ 국립대학교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

④ 감봉처분이 있은 이후 자진퇴직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가 감봉처분을 다투는 경우

⑤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 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69. 항고소송의 심리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 내에서 개개의 위법사유는 심리의 범위에 속한다.

② 처분의 부당 여부는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다.

③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 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0. 당사자소송의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확인판결뿐만 아니라 이행판결도 가능하다.

② 확정판결은 자박력, 확정력, 기속력을 가진다.

③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한 경우,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관련청구소송도 각하하여야 한다.

71.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는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④ 법원이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행한다.

⑤ 제출명령을 받은 재결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7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추가·변경의 대상이 되는 처분사유는 처분시에 존재하던 사유이어야 한다.

②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는 처분시에 존재하는 하자가 사후에 보완되어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구별된다.

③ 위법판단의 기준시와 관련하여 판결시설을 취하는 경우, 피고인 처분청은 소송계속중 처분 이후의 사실적·법적 상황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원고의 방어권과 신뢰의 침해를 근거로 제시한다.

⑤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경우,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73.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고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소송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②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④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취소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74. 甲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고 일단 그 세액의 일부를 자진 납부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무효의 것임이 판명되었다. 이에 甲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환급거부결정을 하였다. 甲이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각하판결 ② 취소판결 ③ 일부취소판결

④ 일부무효확인판결 ⑤ 의무이행판결

75.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행정소송법」제26조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③ 법원은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④ 직권탐지주의설은 행정의 적법성 통제도 행정소송의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⑤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76. 항고소송에서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직권탐지주의 하에서 주장책임의 의미는 완화된다.

②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③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④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⑤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원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77.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②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③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과세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친다.

④ 전소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원고가 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후소의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입증할 수 있다.

78.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니다.

②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③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된다.

⑤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79.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간접강제는 판결의 기속력과 관련된다.

②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③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지만 그것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④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⑤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경우 처분상대방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80.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이다.

②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

④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피고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한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